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입주자모집공고안

※ 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년 3월 28일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김해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해 비 투기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 투기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제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제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김해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 투기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신청 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2018.3.28. 이전부터 계속 거주)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시간 : 08:00~17:30)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기타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김해시가 아닌 기타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 주택은“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gimhae-halla.com>)에 공개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 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아파트의 건본주택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62(삼정동472)에 설치되며, 홈페이지(<http://gimhae-halla.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2019.04.04	2019.04.05	2019.04.08	2019.04.12	2019.04.23.~04.25
방법	인터넷 청약 (08:30~17:30)	인터넷 청약 (08:30~17:30)	인터넷 청약 (08:30~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금융결제원 (www.ap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건본주택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무순위(사전 예약접수) 실시 안내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의거 사전 예약접수를 실시하며, 정당계약 완료 후 잔여세대 발생 시 사전 예약접수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잔여세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 예약접수자 대상 공급세대수가 없으므로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 : 만 19세 이상인 성인(또는 세대주)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동일한 광역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거주자(김해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거주자)

* 과열 우려시 청약자격을 강화하여 운영할 방침이오니 모집공고문 작성전에 결제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 (경쟁 발생 시 잔여세대수의 100% 예비입주자 선정)

■ 유의사항

- 1인 1건만 신청가능(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단, 사전 예약접수 후에도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당첨자(추가입주자 및 부적격당첨자 포함)로 선정된 경우 사전예약접수 입주자선정 시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 청약자격등을 위반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무순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잔여세대 동호수 등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http://gimhae-halla.com>) (또는 건본주택)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사전 예약접수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예약접수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에게 당첨자발표일(00:00)에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당사에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주요일정

구분	사전 예약접수	당첨자발표 ^{주)}	계약체결
일정	04월 02일(화) ~ 04월 03일(수)	05월 10일(수)	05월 13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금융결제원(www.ap2you.com) - [APT무순위] 메뉴 * PC에서만 가능, 청약통장 불필요	금융결제원(www.ap2you.com) * PC에서만 가능	당사 건본주택

				12	76,185	300,575	376,760	10,000	27,676	37,676	37,676	37,676	37,676	37,676	37,676	113,028
				13	76,185	303,915	380,100	10,000	28,010	38,010	38,010	38,010	38,010	38,010	38,010	114,030
				14	76,185	303,915	380,100	10,000	28,010	38,010	38,010	38,010	38,010	38,010	38,010	114,030
				15	76,185	303,915	380,100	10,000	28,010	38,010	38,010	38,010	38,010	38,010	38,010	114,030
				16	76,185	307,255	383,440	10,000	28,344	38,344	38,344	38,344	38,344	38,344	38,344	115,032
				17	76,185	307,255	383,440	10,000	28,344	38,344	38,344	38,344	38,344	38,344	38,344	115,032
				18	76,185	307,255	383,440	10,000	28,344	38,344	38,344	38,344	38,344	38,344	38,344	115,032
				19	76,185	310,595	386,780	10,000	28,678	38,678	38,678	38,678	38,678	38,678	38,678	116,034
				20	76,185	310,595	386,780	10,000	28,678	38,678	38,678	38,678	38,678	38,678	38,678	116,034
				21	76,185	310,595	386,780	10,000	28,678	38,678	38,678	38,678	38,678	38,678	38,678	116,034
				22	76,185	313,935	390,120	10,000	29,012	39,012	39,012	39,012	39,012	39,012	39,012	117,036
				23	76,185	313,935	390,120	10,000	29,012	39,012	39,012	39,012	39,012	39,012	39,012	117,036
				24	76,185	313,935	390,120	10,000	29,012	39,012	39,012	39,012	39,012	39,012	39,012	117,036
				25	76,185	317,275	393,460	10,000	29,346	39,346	39,346	39,346	39,346	39,346	39,346	118,038
				26	76,185	317,275	393,460	10,000	29,346	39,346	39,346	39,346	39,346	39,346	39,346	118,038
				27	76,185	317,275	393,460	10,000	29,346	39,346	39,346	39,346	39,346	39,346	39,346	118,038
				28	76,185	320,615	396,800	10,000	29,680	39,680	39,680	39,680	39,680	39,680	39,680	119,040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분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동의 최상층에는 다락형 유니트가 설치되며, 다락형 유니트는 별도의 타입으로 분리되어있지 않아, 선택하여 청약할 수 없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유의사항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호실별 등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소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급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 사업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10%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10%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당 사업지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20%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당 사업지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범위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대상자	64	75	8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보훈처추천)국가유공자 등	1	1	13	1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2	14
	장애인	1	1	13	1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1	42	4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	63	67
		일반공급(25%)	-	21	2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	1	11	1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되, 2018년 12월 11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김해시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지난 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에 한하여 방문접수(건본주택만 가능)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건본주택만 가능)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청약신청 시간과 방문접수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기체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종류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44대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 경남동부보훈지청, 경남서부보훈지청 복지과 / 장애인 : 경남도청, 울산시청, 부산시청 장애인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기획조정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며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44세대 / 총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가입기간 6개월 이상/예치금 충족)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자녀(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자녀(2)	15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10년 이상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금액 지급 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 당첨 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88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 부여(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가입기간 6개월 이상/예치금 충족)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 적용)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입주 전 파악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 처분하고 무주택기간 2년 경과 포함)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일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악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5,401,815원 ~6,482,177원	6,165,203원 ~7,398,242원	6,699,866원 ~8,039,838원	7,348,892원 ~8,818,669원	7,997,918원 ~9,597,500원	8,646,944원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 이하	6,482,178원 ~7,022,358원	7,398,243원 ~8,014,763원	8,039,839원 ~8,709,825원	8,818,670원 ~9,553,558원	9,597,501원 ~10,397,292원	10,376,333원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과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13세대 / 전체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며,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기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제외동포(제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김해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기타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김해시가 아닌 기타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1순위 및 2순위 모두 적용하여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바랍니다.
청약 신청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함.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 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해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중복 청약접수 관련(이중당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당첨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면적구분	청약 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민영 주택	김해시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1순위	전용 면적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 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전용 면적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추첨제 적용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 전일까지 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의 조건을 충족한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해당 청 	

			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주택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기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 추천제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김해시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합니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당첨자 선정방법

특별 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특별공급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가점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되, 예비입주자의 수가 선정하여야 하는 예비입주자의 총수에 미달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가점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건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 모두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신청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됩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청약접수,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이중당첨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됨. 단,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개편으로 인한 당첨자발표일 일원화로 동일당첨지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특별공급+일반공급)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제외) 처리함. ※ 상기 특별공급 당첨자발표일 일원화 예외사항 외 청약자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특별공급 1회제한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되며, (일반공급+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인정됨.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일자	신청 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2019.04.04.(목) (APT2you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 KB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사업주체 건본주택 [노약자, 장애인 등만 방문접수 가능]
일반 공급	1순위	2019.04.05.(금) 08: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KB국민은행 가입자 외) - PC: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9.04.08.(월) 08: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0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건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0		신분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요망
	0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일반 특별공급	0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장애인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주민등록표 등본	자녀	
	0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진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세대주)와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0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진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0	기본증명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0	비사업자 확인 각서		●비사업자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0	소득증빙 서류(표1 참조)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제3자 대리 신청 시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0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0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0	인장, 신분증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 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 보험금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자소득용소득금액증면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원	●동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용확인서)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비치)	●접수장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가 불가함)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외 .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 .본인확인증서류 :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등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일시: 2019.04.10.(수)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시 - 2019.04.23.(화)~2019.04.25.(목) 10:00~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472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당사 홈페이지 http://gimhae-halla.com에서도 확인가능함)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www.ap2you.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4.10.(수)부터 10일간 조회가능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인터넷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9.4.10(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VI. 계약 체결 및 입주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일시 : 2019.04.23(화) ~ 2019.04.25(목) (3일간, 시간 10:00~16:00)
- 계약체결장소 :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견본주택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62(삼정동 472) / 문의전화 : 055-311-7400)

2. 계약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계약자의 인감도장 .무통장 입금증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추가 구비사항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본인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견본주택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자: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1부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에 한함) .특별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자는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약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334399-7	코리아신탁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에 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입금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 중도금 및 잔금납부계좌는 공급계약서에 세대별로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되고, 납부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인 상기 계약금 납부계좌로 자동이체 됩니다.
- ※ 상기 계좌 및 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입금계좌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의 미납 또는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중도금 1차~6차 60%범위 내 무이자)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는(중도금 대출 무이자)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분양가의 총 60%내에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대출이자자는 별도의 약정 (통지) 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으니 대출관련 확인 후 청약, 계약하시기 바랍니다..당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상품으로 향후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중에 가입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도금 대출진행 시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의 세대당 보증건수(2건이내) 및 보증한도(3억원 이하) 등 제한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안내

- 정당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대상자 소명기간(부적격대상자통보일로 부터 7일) 이후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개시일전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개별통보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1년 12월 30일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실내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실내골프연습장, 카페, GX룸, 남녀 사우나, 찜질방, 피트니스 클럽, 독서실, 실버카페(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VII. 별도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납부계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세대당 확장금액	확장부분	확장금액			비 고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64	6,270,000	거실+주방+침실2+침실3	627,000	2,508,000	3,135,000	
75	7,370,000	거실+주방+침실2+침실3	737,000	2,948,000	3,685,000	
84	8,470,000	거실+주방+침실2+침실3	847,000	3,388,000	4,235,000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334403-2	코리아신탁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발코니확장공사비 계약금 납부 :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 제출 [건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에 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입금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별도의 환불이자는 없음.

2.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 부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 별도의 행위허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입주 후에 시공사와 무관하게 실내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습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장치는 내풍압, 구조건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체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샷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	<온돌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인조대리석>현관, <온돌마루>침실, <타일>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바닥 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면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하부틀, 코킹, 욕실환풍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

	기, 스위치, 콘센트	기. 통신배관배선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주방가구	주방가구: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주방가전기기일체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설치관련)전기, 통신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 배기덕트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대내 가구일체,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창호 및 기타사항	창호(문틀,목문짝,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도어

3.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64.3971	75.7607	84.9743
금액	20,975,000	24,561,000	27,488,000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은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금액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체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타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람.
-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VIII. 유의 사항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 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한다)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이 경우 주택가격은 별표1 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자는 제외)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자격 기준일 관련 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시 청약 신청 가능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모집공고 당일까지 김해시로 전입시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통장 미납금 예치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선택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선택시 청약 신청 가능(최초주택규모선택 후 수시변경 가능)
- 청약신청 관련 사항
 - 기 청약자격 전산 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 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도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단지 내외부 여건

구분	구비사항	
공통 부분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도로 및 조정선, 조정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방법 : 주택형별 면적(m²)×0.3025] ●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면적(계단실, 코아,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로 계산되어 분배되어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2019년 3월 8일 사업계획변경승인완료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지의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외부 도로 및 방음벽, 가로수 계획은 추후 실시계획인가 인허가 과정 중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경계의 일부 용벽 등은 추후 주변 레벨차이에 따라 추가 설치, 변경 또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부지 북측(폭 18m), 서측(폭 20m), 남측(폭 25m)도로 및 동측(폭27m)도로를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 등으로 주택법에 명시된 소음기준에는 만족하나, 고층세대에는 교통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여야 합니다.
	이삿짐차량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동/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망권, 일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계획에 따라 작성 제출된 일조보고서상 일조권 수인 한도를 충족하는 비율이 61.08%로 수인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부 있는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면적 등은 경계측량 및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은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 계산되었으며, 추후 설계 변경등으로 인한 면적 변동시 용도별 대지면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세대는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적용됩니다.
	설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키 수정,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면, 벽체 마감, 외부 색채, 간판 위치, 조정 등의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공동주택건립으로 유입되는 학생은 삼계초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본 사업부지 인근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환경관련 배출업소와 소규모 제조업 시설로 인해 대기, 악취,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협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측사 등의 악취,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 및 관람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합니다.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단지 외 각종 교육시설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치 도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습니다. 동별, 층별 또는 세대별로 일조, 통풍, 소음, 조망, 콘크리트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주동 외부 색채는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는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 경관용 조명, 이동통신 및 TV공청설비 안테나, 피뢰침, 태양열 집광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공해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야간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경관조명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건축계획에 따라 옥상경관 조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층세대 프라이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동의 저층 세대는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내 도로, 수공간 및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자전거 보관소 등에 의해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조망권 및 일조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변에 위치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전 세대 입주민을 위한 관리사무소는 102동 지상1층(필로티 주차장층)에 위치해있고, 단지내 전원공급을 위한 전기시설(전기실, 발전기실 등)은 지하1층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45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홍보물 상의 어린이집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후 어린이집 입주업체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공간의 창호 디자인은 현장 여건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놀이터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급배기구, 천창,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보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홍보물의 배치도 및 조감도 상에 표현된 단지내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D·A, 제연휨륜)은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인접 세대는 각 시설물의 에어컨,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악취에 의한 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동 102동 후면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옥상은 특정 사용자에 의해 전유공간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실외기 위치는 근생/판매시설 분양자에 의해 확정 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지상(데크층)의 도로(차도, 보도)는 긴급 및 서비스(이삿짐, 소방차량, 쓰레기차량 등) 차량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는 현재 사업계획승인 도서기준으로 총 2,772대이며, 아파트 2,732대, 근생/판매시설 40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시공 및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는 총 지하 4개층 및 지상 1층(근생/판매시설 주차장)으로 구성되어있고, 지하주차장의 경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하층 특성상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생/판매시설의 주차구획은 근생/판매시설의 옥상에 별도로 구획되어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의 유효 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 경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도로의 경사 등은 시공중 주변과의 레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옹벽/구배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 사업부지 내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공용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 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 탑승위치, 주동입면 등)은 사용검사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건본주택 미건설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 미건설된 세대(맞세대)의 경우 계약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건설세대와 다른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영구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매수 공법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화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별도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으며, 단지 내 오수관로는 외부 차집관로와 직접 연결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펌프실 및 빗물저류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에는 펌프실 및 저수조가 설치됨으로 장비운영으로 인한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샷시,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확장시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이중창호 유리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측 창호 : 22mm 로이복층유리 - 내측 창호 : 22mm 일반복층유리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빨래 건조대 설치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단창호의 유리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내부 : 22mm 로이복층유리 - 발코니/외부 : 22mm 일반복층유리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대피공간, 세탁기공간) 샨시는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 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 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거나 결로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미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욕실 배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발코니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세대 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피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내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화재 발생시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물건적재 및 기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주후에도 개별적으로 이를 제거하거나 이를 다른 재질의 문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에는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됩니다(3~10층)
초과 발코니, 코너 발코니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분양면적에는 전용면적으로 산입되는 초과발코니 및 코너발코니가 있으며, 전용면적으로 산입되는 발코니 면적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64형: 0.0838㎡, 74형: 0.5094㎡, 84형: 0.1314㎡
소화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세대는 화재에 대비하여 천정 및 발코니 측벽부위에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설치되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및 감지기 위치, 개수는 건본주택 소방 준공용이므로 실제 시공시에는 소방법에 따라 헤드 위치나 개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실 등의 안목 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의 벽체의 마감두께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길이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대 렌지후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에 설치되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내부에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작동 시 소음이 실내에 전달 됩니다.
주방/욕실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세대는 주방 및 욕실 직배기방식이 적용되며, 주위 환경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세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조리용 전기룩탑 설치로 주방에는 가스가 공급 되지 않습니다.
세대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에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스프링클러,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세대환기 시스템은 각 실 창호에 설치된 자연환기 시스템으로, 시스템 특성상 외부 소음 및 냄새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및 렌지후드를 동시 운전할 경우 주위 환경 여건에 따라 냄새 및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냉방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 등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선택해야 하며, 설치 세대 및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매립배관은 침실1(벽걸이형 기준), 거실(스탠드형 기준) 2개소에 설치되며 매립박스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점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세대 내외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 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의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통신 단자함 및 세대 분전반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 벽체 선택 유무에 따라 해당 실의 콘센트 및 스위치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됩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감지기,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 구획이 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된 배수구는 악취 및 역류 차단용 배수구로, 제품 특성 상 이물질에 의한 배수능력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청소가 필요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배관은 가변형 벽체 선택 타입에 맞춰 시공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미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정형 에어컨은 옵션선택 사항이므로 관련 내용은 비치된 카달로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실 형태 엘리베이터 홀 및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계단실의 형태는 전용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 형태에 따라 설비PD,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형태 및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접하는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각각 다르고, 외부와 면하는 창호가 없거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는 코어마다 17인승 한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인승 변경 등의 요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승강로가 인접한 일부 세대의 침실은 승강기운행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H, 모형 및 조감도, 카달로그	분양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은 주택형의 경우 내부치수, 마감재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이 건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 내 분양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및 카달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및 건본주택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 등에 표현된 실의 규모 관련 치수 또는 면적 등은 제작 시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건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달로그의 부대복리시설 내부에 표현된 운동시설의 종류 및 개수, 각종 가구, 바닥 및 벽체 마감, 소품, 기자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형 및 조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및 카달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벽 리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외벽의 리브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벽 장식물,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아파트 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부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의 형태 등은 실제 시공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차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및 카달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의 단지 내외부의 도로의 차선과 보행로 등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외부 색채는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표시) 규정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div data-bbox="315 485 882 1230" data-label="Complex-Block">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김해시 삼계동 삼계두곡지역 주택조합아파트 2. 신 청 자: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3.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519-3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p> <p>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고품질물량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공벽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고품질(도르칠)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급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기밀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존 단지의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과도한 지하개발 저감</td><td>해당없음</td></tr> <tr><td>3. 토양수질오염 최소화</td><td>해당없음</td></tr> <tr><td>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td><td>해당없음</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td><td>*</td></tr> <tr><td>7. 산·재생에너지 이용</td><td>해당없음</td></tr> <tr><td>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td><td>해당없음</td></tr> <tr><td>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td><td>해당없음</td></tr> <tr><td>10. 환경상선천 제품(EPO)의 사용</td><td>**</td></tr> <tr><td>11. 저탄소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2. 저탄소한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td><td>해당없음</td></tr> <tr><td>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td><td>*</td></tr> <tr><td>16. 빗물관리</td><td>해당없음</td></tr> <tr><td>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td><td>해당없음</td></tr> <tr><td>18. 절수형 기기 사용</td><td>**</td></tr> <tr><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td>*</td></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td><td>*</td></tr> <tr><td>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td><td>***</td></tr> <tr><td>5. 건물환경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td>6. 공간·유치권리 준수 및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0. 공용공간외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1. 커뮤니티 문화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 내 일본 후쿠시마</td><td>*</td></tr> <tr><td>13. 화재·가스 등 안전시스템</td><td>**</td></tr> <tr><td>14. 발발안전 콘서트</td><td>***</td></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감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제연설비</td><td>*</td></tr> <tr><td>3. 내화성능</td><td>*</td></tr> <tr><td>4. 수평피난거리</td><td>***</td></tr> <tr><td>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03월 14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p> </div>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고품질물량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공벽벽의 차음성능	***	4. 고품질(도르칠)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단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저감	해당없음	3. 토양수질오염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산·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해당없음	10. 환경상선천 제품(EPO)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저탄소한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해당없음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물환경의 환경관리 계획	***	6. 공간·유치권리 준수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외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문화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본 후쿠시마	*	13. 화재·가스 등 안전시스템	**	14. 발발안전 콘서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6. 피난설비	*	<div data-bbox="1352 469 1906 1241" data-label="Complex-Block"> <h2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 인증서</h2> <table border="1">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 김해시 삼계동 삼계두곡지역 주택조합아파트</td> <td>인증번호: 제2019-2076호</td> </tr> <tr> <td>건축주: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td> <td>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준공(예정)일: -</td> <td>유효기간: 2019.03.14 ~ 사용종결일</td> </tr> <tr> <td>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519-3번지 일원</td> <td>[인증 등급]</td> </tr> <tr> <td>층 수: 지면 5층, 지하 2층 / 1936세대</td> <td>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td> </tr> <tr> <td>면 적: 301,771.2908㎡</td> <td>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td> </tr> <tr> <td>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td> <td>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td> </tr> <tr> <td>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장명</td> <td>환경부고시 제2016-110호</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data-bbox="1435 903 1823 1145" data-label="Figure"> <p>[분야별평가] 종합등급 ☆☆☆</p> <table border="1"> <tr><th>분야</th><th>점수 (%)</th></tr> <tr><td>포지티브 및 고품</td><td>39%</td></tr> <tr><td>에너지 및 환경요역</td><td>64%</td></tr> <tr><td>재료 및 자원</td><td>48%</td></tr> <tr><td>물순환관리</td><td>23%</td></tr> <tr><td>유지관리</td><td>96%</td></tr> <tr><td>생태환경</td><td>15%</td></tr> <tr><td>실내환경</td><td>65%</td></tr> </table> <p>2019년 03월 14일</p> </div> <p style="text-align: center;">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p style="text-align: center;">*제외인증물 부문 인증물은 인증 목적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p> </div>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김해시 삼계동 삼계두곡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인증번호: 제2019-2076호	건축주: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준공(예정)일: -	유효기간: 2019.03.14 ~ 사용종결일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519-3번지 일원	[인증 등급]	층 수: 지면 5층, 지하 2층 / 1936세대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면 적: 301,771.2908㎡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장명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분야	점수 (%)	포지티브 및 고품	39%	에너지 및 환경요역	64%	재료 및 자원	48%	물순환관리	23%	유지관리	96%	생태환경	15%	실내환경	65%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고품질물량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공벽벽의 차음성능	***																																																																																																																																												
4. 고품질(도르칠)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단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저감	해당없음																																																																																																																																												
3. 토양수질오염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산·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해당없음																																																																																																																																												
10. 환경상선천 제품(EPO)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저탄소한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우수저류수 이용	해당없음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물환경의 환경관리 계획	***																																																																																																																																												
6. 공간·유치권리 준수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외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문화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본 후쿠시마	*																																																																																																																																												
13. 화재·가스 등 안전시스템	**																																																																																																																																												
14. 발발안전 콘서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6. 피난설비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김해시 삼계동 삼계두곡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인증번호: 제2019-2076호																																																																																																																																												
건축주: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준공(예정)일: -	유효기간: 2019.03.14 ~ 사용종결일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519-3번지 일원	[인증 등급]																																																																																																																																												
층 수: 지면 5층, 지하 2층 / 1936세대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면 적: 301,771.2908㎡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장명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분야	점수 (%)																																																																																																																																												
포지티브 및 고품	39%																																																																																																																																												
에너지 및 환경요역	64%																																																																																																																																												
재료 및 자원	48%																																																																																																																																												
물순환관리	23%																																																																																																																																												
유지관리	96%																																																																																																																																												
생태환경	15%																																																																																																																																												
실내환경	65%																																																																																																																																												

■ 친환경 주택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반영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0.7kW이하 전동지,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KS규격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세대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 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기계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주)삼진탐테크엔지니어링	(주)부흥이앤씨
감리금액	4,630,734,000	909,470,000	660,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82019-101-0003300	일천일백이십오억이천팔백구십만육천원정 (₩112,528,906,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 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웁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회사
상 호	김해삼계두곡 지역주택조합	(주)한라
주 소	김해시 삼계중앙로 57, 501(우리빌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사업자등록번호	317-82-72602	215-81-40656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62(삼정동472)

■ 분양문의 : 055-311-74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